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문승욱 (산업통상자원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·영세자영업자 등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톤당 62,283원에서 43,600원으로 낮추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4. 8. ~ 4. 1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2022년 7월 31일까지는 톤당 43,600원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탄의 수입 부과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「관세법」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부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부과금의 부과기준 등)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. 1. ~ 4. (생 략) 5.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 탄: 톤당 <u>62,283원</u> <단서 신 <u>설</u> > ② · ③ (생 략)	제24조(부과금의 부과기준 등) ①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----- <u>62,283원</u> . 다만, <u>2022</u> <u>년 7월 31일까지는 톤당 43,60</u> <u>0원으로 한다.</u>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5216